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50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김태호·조경태·신성범

엄태영 • 박충권 • 조승환

성일종 • 주호영 • 진종오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첩부된 선거 벽보는 약 117만 장이고 배부된 선거운동 현수막은 6만6000장에 달하 며, 1천톤 이상의 廢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음에도 재활용률은 24.5% 에 그쳤음.

선거벽보는 통상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잘 빠지지 않고 코팅 처리되어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음. 현수막의 경우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어 매립 시잘 썩지 않아 화학염료 유출로 토양이 오염될 수 있고,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해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 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 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및 제6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선거벽보용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 ① 관할선거관리위 원회는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를 대신하는 선거벽보용 디 지털 게시판(이하 "디지털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제64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대신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디지털 게시판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2. 선거벽보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한 파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기 위하여 후보자

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거벽보의 수량

- ④ 선거벽보 작성 및 첩부에 관하여는 제64조를 따른다.
- ⑤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운영, 선거벽보에 관한 공고,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1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를 위반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이외의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 나 현수막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4조의2(선거벽보용 디지털 게
	시판 설치·운영) ① 관할선거
	관리위원회는 전자적 문서로
	전환된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
	면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제64
	조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를 대
	신하는 선거벽보용 디지털 게
	시판(이하 "디지털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
	<u>털</u>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게시판을 설
	<u>치·운영하기 곤란한 장소 등</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
	<u>털</u>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
	까지 제64조제3항에 따른 공고
	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
	<u>항을 공고하여야 한다.</u>
	1. 디지털 게시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선거벽보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한 파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운영 하기 곤란한 장소 등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거벽보의 수량
- ④ 선거벽보 작성 및 첩부에 관하여는 제64조를 따른다.
- ⑤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운 영, 선거벽보에 관한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 누 구든지 이 법에 따른 선거벽보 를 작성하거나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 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① ~ ⑥ (생 략)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2. ~ 6. (생 략

⑧ ~ ⑫ (생 략)

\bigcirc	\sim	$\widehat{(6)}$	(혂행과	간으)
(I)		(U)	(77 % 47	乍口!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7조의2(친환경 소재 사용)를 위반하여 생화학적으 로 분해가 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이외의 소재로 제작된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사용한 자

- 2. ~ 6. (현행과 같음)
- ⑧ ~ ⑫ (현행과 같음)